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 - 101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조문 단순 이동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함—일몰제 규정
- 다. 국민권익위원회 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  
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
- 라.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 비표준어 및 띄어쓰기  
등을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기금 관련 인용 조문 이동(제133조 → 제142조)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 
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(신설 제2조의2)
- 다. 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의  
연임 규정 및 제작기파회피·해촉 규정 마련(변경 제5조의2 제5항,  
신설 제5조의2 제6항, 신설 같은조 제7항)
- 라.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 잘못된 띄어쓰기와 비표준어를  
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

### **3. 개정 근거**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### **4. 개정 조례안 : 따로붙임**

### **5. 예산 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**

### **6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  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- 나. 합의 : 해당 없음
- 다. 규제여부 : 해당 없음

### **7. 기타사항**

- 가. 입법예고 : 2012. 10. 18. ~ 11. 7. (제출된 의견없음)
- 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감사담당관 권고 사항 반영
  - 제5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모든 위원으로 개정한 권고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제6항 및 제7항에 신설
- 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 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2.11.15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**제1조**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지역(이하 “관할지역”이라 한다)안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지역안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, “판매대금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판매대금 관리기금”으로, “운용에 관하여”를 “운용에”로 한다.

**제2조** 중 “기금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**제2조의2**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**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3조 각 호 외의 본문**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

“관할지역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 관할지역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장비, 물품구입 및 기타”를 “장비, 물품구입 및 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”을 “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부의”를 “안전으로 상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6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6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하는 자로서”를 “해당하는 사람으로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”를 “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”으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의3제1항 중 “회의를 통할한다”를 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의 회의”로, “개의하고”를

“개최하고”로 한다.

제5조의5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지방재정법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, “기금운용관에  
게, 지출원”을 “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4조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에”를 “제4조에 따른  
용도 외의 목적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출기준”을 “지출 기준”  
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 
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”을 “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”로, “회계  
년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”을 “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”  
으로, “마포구 의회”를 “마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  
회계규칙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과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 
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 
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설치 및 운용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지역(이하 “관할지역”이라 한다) 안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설치)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·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·운용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지역안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설치)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·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<u>관할지역</u> 안에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	1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</u> 관할지역 안에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.	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.
1. 재활용품 수집·선별에 따른 장비,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	1. 재활용품 수집·선별에 따른 장비, 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3. 그 밖의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<u>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</u>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<u>부의</u>하는 사항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<u>1인을 포함한 6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<u>해당하는 자</u>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<u>2인</u></p> <p>⑤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</u>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<u>당해</u> 직에 재직하</p>	<p>제5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<u>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</u>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의</u>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<u>안건으로 상정</u>하는 사항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<u>1명을 포함한 6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<u>해당하는 사람</u>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<u>2명</u></p> <p>⑤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</u>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</p>

현 행	개 정 안
는 기간으로 한다.	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<p>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있다.</p> <p>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5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5조의5(간사 및 수당)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.</p>
	<p>제5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의5(간사 및 수당)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)            ① · ② (생략)            ③ <u>지방재정법</u>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<u>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</u>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	<p>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<u>범위</u>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)           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「<u>지방재정법</u>」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<u>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</u>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
<p>제7조(기금의 사용) ① 기금의 사용은 <u>제4조 규정에 의한 용도와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</u>           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<u>지출기준</u>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기금의 사용) ① 기금의 사용은 <u>제4조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u>           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<u>지출 기준</u>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</p>
<p>제9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<u>회계년도마다</u>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② 구청장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</u> 기금결산</p>	<p>제9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<u>회계연도마다</u>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② 구청장은 <u>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</u> 기금결산보고서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보고서를 작성하여 <u>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</u>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<u>마포구 의회</u>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·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서는 <u>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규칙</u>을 준용한다.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를 작성하여 <u>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</u>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<u>마포구의회</u>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·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서는 「<u>지방재정법</u>」과 「<u>지방재정법 시행령</u>」 및 「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